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90호 2017. 12. 08.(금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251호 하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252호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하동군 조례 제2253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11
- 하동군 조례 제2254호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 13
- 하동군 조례 제2255호 하동군청 및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하동군 조례 제2256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19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76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2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7-188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김재0)..... 30
- 하동군 고시 제2017-189호 재해위험저수지 및 댐 지정해제 고시..... 31
- 하동군 고시 제2017-191호 도로명 주소 개별고시 32

입 법 예 고

- 하동군 공고 제 2017-1240호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34
- 하동군 공고 제 2017-124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0
- 하동군 공고 제 2017-124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5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7-1212호 2017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제도 공고 90
- 하동군 공고 제2017-1219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111
- 하동군 공고 제2017-1220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112
- 하동군 공고 제2017-1241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안)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공고 113

회 람									
--------	--	--	--	--	--	--	--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08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51 호

하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군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단은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08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52 호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하며, 제3조(중전의 제4조) 본문 외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2조(중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5조를 제4조로 하며,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기념행사
-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 5. 그 밖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0조(중전의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실비지급) 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에게 교육, 행사참석, 봉사활동 등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에 소요되는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대 등)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2조를 제21조로 하며, 제23조를 제2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공공 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

방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군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정신과 협동정신을 함양시켜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적으로 한다.

<삭 제>

제2조(정의) -----

----- 뜻은 -----

-.

1. -----이란

-----.

2. -----란

-----.

3. -----란

-----.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 2. 사회복지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 3. 환경보존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4. 교육 및 청소년 선도와 노인 및 아동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5. 재해, 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6. 문화, 예술, 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 7.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8. 인권옹호·부패방지·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9.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신 설>
-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 11.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레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

-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 3. 환경보전 ----- 활동
-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 9. 재난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 13. ----- 국외봉사활동
-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봉사활동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 (생 략)

제6조 ~ 제11조 (생 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 제16조 (생략)

제17조 · 제18조 (생략)

<신 설>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
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
동

제4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5조 ~ 제10조 (현행 제6조부터 제
11조까지와 같음)

제11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2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3조 · 제14조 (현행 제15조 및 제
16조와 같음)

제15조 · 제16조 (현행 제17조 및 제
18조와 같음)

제17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
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
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
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
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
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9조 · 제20조 (생략)

제21조(실비지급) 군수, 센터의 장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행사참석, 봉사활동등을 실시하게 하였을 경우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대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생략)

제23조 (생략)

제18조 · 제19조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

제20조(실비지급) 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에게 교육, 행사참석, 봉사활동 등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에 소요되는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대 등)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1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2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08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53 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악양공설시장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4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수탁징수자 결격사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제18조(수탁징수자 결격사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u>		4. <u>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u>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 ① <u>시장의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사전 허가 없이 시장을 사용한 자는 1 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u> ② <u>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u>		<삭 제>																																																																					
[별표 1] 하동군 공설시장 명칭과 위치·장날(제2조 관련)		[별표 1] 하동군 공설시장 명칭과 위치·장날(제2조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장명</th> <th>위 치</th> <th>장 날</th> <th>비 고 (운영방법)</th> </tr> </thead> <tbody> <tr> <td>하동공설시장</td> <td>하동읍 읍내리 249</td> <td>매월 2일 7일</td> <td>상설+정 기</td> </tr> <tr> <td>화개장터</td> <td>화개면 탑리 726-46</td> <td></td> <td>상설</td> </tr> <tr> <td><u>약양공설시장</u></td> <td><u>약양면 정서리 271-7</u></td> <td><u>매월 1일 6일</u></td> <td><u>정기</u></td> </tr> <tr> <td>횡천공설시장</td> <td>횡천면 횡천리 507-2</td> <td>매월 5일 10일</td> <td>정기</td> </tr> <tr> <td>계천공설시장</td> <td>금남면 계천리 355-3</td> <td>매월 5일 10일</td> <td>정기</td> </tr> <tr> <td>진교공설시장</td> <td>진교면 진교리 302-4</td> <td>매월 3일 8일</td> <td>정기</td> </tr> <tr> <td>북천공설시장</td> <td>북천면 직전리 597-1</td> <td>매월 4일 9일</td> <td>정기</td> </tr> <tr> <td>옥중공설시장</td> <td>옥중면 청룡리 124-15</td> <td>매월 3일 8일</td> <td>정기</td> </tr> </tbody> </table>	시장명	위 치	장 날	비 고 (운영방법)	하동공설시장	하동읍 읍내리 249	매월 2일 7일	상설+정 기	화개장터	화개면 탑리 726-46		상설	<u>약양공설시장</u>	<u>약양면 정서리 271-7</u>	<u>매월 1일 6일</u>	<u>정기</u>	횡천공설시장	횡천면 횡천리 507-2	매월 5일 10일	정기	계천공설시장	금남면 계천리 355-3	매월 5일 10일	정기	진교공설시장	진교면 진교리 302-4	매월 3일 8일	정기	북천공설시장	북천면 직전리 597-1	매월 4일 9일	정기	옥중공설시장	옥중면 청룡리 124-15	매월 3일 8일	정기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장명</th> <th>위 치</th> <th>장 날</th> <th>비 고 (운영방법)</th> </tr> </thead> <tbody> <tr> <td>하동공설시장</td> <td>하동읍 읍내리 249</td> <td>매월 2일 7일</td> <td>상설+정 기</td> </tr> <tr> <td>화개장터</td> <td>화개면 탑리 726-46</td> <td></td> <td>상설</td> </tr> <tr> <td>횡천공설시장</td> <td>횡천면 횡천리 507-2</td> <td>매월 5일 10일</td> <td>정기</td> </tr> <tr> <td>계천공설시장</td> <td>금남면 계천리 355-3</td> <td>매월 5일 10일</td> <td>정기</td> </tr> <tr> <td>진교공설시장</td> <td>진교면 진교리 302-4</td> <td>매월 3일 8일</td> <td>정기</td> </tr> <tr> <td>북천공설시장</td> <td>북천면 직전리 597-1</td> <td>매월 4일 9일</td> <td>정기</td> </tr> <tr> <td>옥중공설시장</td> <td>옥중면 청룡리 124-15</td> <td>매월 3일 8일</td> <td>정기</td> </tr> </tbody> </table>	시장명	위 치	장 날	비 고 (운영방법)	하동공설시장	하동읍 읍내리 249	매월 2일 7일	상설+정 기	화개장터	화개면 탑리 726-46		상설	횡천공설시장	횡천면 횡천리 507-2	매월 5일 10일	정기	계천공설시장	금남면 계천리 355-3	매월 5일 10일	정기	진교공설시장	진교면 진교리 302-4	매월 3일 8일	정기	북천공설시장	북천면 직전리 597-1	매월 4일 9일	정기	옥중공설시장	옥중면 청룡리 124-15	매월 3일 8일	정기	
시장명	위 치	장 날	비 고 (운영방법)																																																																				
하동공설시장	하동읍 읍내리 249	매월 2일 7일	상설+정 기																																																																				
화개장터	화개면 탑리 726-46		상설																																																																				
<u>약양공설시장</u>	<u>약양면 정서리 271-7</u>	<u>매월 1일 6일</u>	<u>정기</u>																																																																				
횡천공설시장	횡천면 횡천리 507-2	매월 5일 10일	정기																																																																				
계천공설시장	금남면 계천리 355-3	매월 5일 10일	정기																																																																				
진교공설시장	진교면 진교리 302-4	매월 3일 8일	정기																																																																				
북천공설시장	북천면 직전리 597-1	매월 4일 9일	정기																																																																				
옥중공설시장	옥중면 청룡리 124-15	매월 3일 8일	정기																																																																				
시장명	위 치	장 날	비 고 (운영방법)																																																																				
하동공설시장	하동읍 읍내리 249	매월 2일 7일	상설+정 기																																																																				
화개장터	화개면 탑리 726-46		상설																																																																				
횡천공설시장	횡천면 횡천리 507-2	매월 5일 10일	정기																																																																				
계천공설시장	금남면 계천리 355-3	매월 5일 10일	정기																																																																				
진교공설시장	진교면 진교리 302-4	매월 3일 8일	정기																																																																				
북천공설시장	북천면 직전리 597-1	매월 4일 9일	정기																																																																				
옥중공설시장	옥중면 청룡리 124-15	매월 3일 8일	정기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08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54 호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상품권 활성화 시책)</p> <p>① (생 략)</p> <p>② <u>군수는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u> <u>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사·용역·</u> <u>물품구매 등의 공고 또는 계약</u> <u>체결, 행사·민간보조금 지급 시</u> <u>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u> <u>각종 포상금·수당 등의 전부 또</u> <u>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u> <u>수 있다.</u></p>	<p>제12조(상품권 활성화 시책)</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군수는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u> <u>촉진을 위하여 각종 시상금 등</u> <u>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u> <u>로 지급할 수 있다.</u></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08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55 호

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군, 읍면사무소”를 “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

제2조 중 “군, 읍면사무소”를 “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

항 및 제6조제4항 중 “읍·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로 한다.

②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제3호 중 “읍·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

[별표]

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하동군청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금남면사무소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0	
			금성면 "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149	
하동읍 행정복지센터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0		진교면 행정복지센터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2	
화개면사무소	하동군 화개면 원탑1길 6		양보면사무소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36	
악양면 "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57		북천면 "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51	
적량면 "	하동군 적량면 대티길 9		청암면 "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72	
횡천면 "	하동군 횡천면 경 서 대 로 1175-3		옥종면 행정복지센터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3	
고전면 "	하동군 고전면 하 동 읍 성 로 349				

산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u>군,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u>군,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u></p> <p>(별표) <u>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제2조 관련)</u></p>								<p><u>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u> ----- -.</p> <p>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u>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u>----- -----.</p> <p>(별표) <u>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 (제2조관련)</u></p>		
기관명	소재지	비고	기관명	소재지	비고	기관명	소재지	비고		
하동군청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금남면 사무소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0		금남면 사무소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0			
			금성면 "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149		금성면 "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149			
<u>하동읍 사무소</u>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0		<u>진교면</u> "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아길 62		<u>진교면 행정복지센터</u>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아길 62			
화개면 사무소	하동군 화개면 원탑1길 6		양보면 "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36		양보면 사무소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36			
악양면 "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57		북천면 "	하동군 북천면 경 서 대 로 2451		북천면 "	하동군 북천면 경 서 대 로 2451			
적량면 "	하동군 적량면 대티길 9		청암면 "	하동군 청암면 청화로 672		청암면 "	하동군 청암면 청화로 672			
횡천면 "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175-3		<u>옥종면</u> "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3		<u>옥종면 행정복지센터</u>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3			
고전면 "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349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08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56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51명”을 “65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38명”을 “643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656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25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87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산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651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38명</u></p> <p>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656명</u> ----- -----.</p> <p>1. ----- : <u>643명</u></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p>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rowspan="2">기관별</th> <th rowspan="2">총계</th> <th rowspan="2">본청</th> <th rowspan="2">의회사무과</th> <th colspan="2">직속기관</th> <th rowspan="2">사업소</th> <th rowspan="2">읍</th> <th rowspan="2">면</th> </tr> <tr> <th>보건소</th> <th>농업기술센터</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td> <td style="color: blue;">65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군수</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td> <td style="color: blue;">62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5급</td> <td></td> <td>3</td> <td>2</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td> <td>34</td> <td>12</td> <td>2</td> <td>1</td> <td>4</td> <td>2</td> <td>1</td> <td>12</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td> <td style="color: blue;">58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 계		651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20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82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rowspan="2">기관별</th> <th rowspan="2">총계</th> <th rowspan="2">본청</th> <th rowspan="2">의회사무과</th> <th colspan="2">직속기관</th> <th rowspan="2">사업소</th> <th rowspan="2">읍</th> <th rowspan="2">면</th> </tr> <tr> <th>보건소</th> <th>농업기술센터</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td> <td style="color: blue;">65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군수</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td> <td style="color: blue;">62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5급</td> <td></td> <td>3</td> <td>2</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td> <td>34</td> <td>12</td> <td>2</td> <td>1</td> <td>4</td> <td>2</td> <td>1</td> <td>12</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td> <td style="color: blue;">58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 계		656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25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87	-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 계		651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20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82	-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 계		656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25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87	-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08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 1176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총 계			656	292	68	56	9	23	13	22	173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반직	일반직 계		625	288	68	31	9	23	11	22	173
	4급 소계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1	1							
	4~5급소계		3	2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시설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보건진료사무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행정		2	1					1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		3	1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시설		3	2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5	1				1	1		2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행정·농업·지도관		1			1					
	농업·지도관		2			2					

구 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 업 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6급 소계		158	79	12	8	2	3	3	7	44
	행정		12	11	1						
	세무		1	1							
	속기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7	7							
	운전		4	2					1	1	
	행정·세무		13	6						1	6
	행정·사회복지		6	5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2	7		4				1	10
	행정·녹지		3								3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3	12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3	2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5	1							4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세무·농업		7	3							4
	행정·세무·시설		5	4						1	
	행정·세무·전산·농업		3	1					1		1
	행정·전산·농업		1							1	
	행정·전산·시설		3	1							2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4	2			1				1
	행정·농업·녹지		3	1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6	2			1				3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시설·환경		2	1							1	
행정·해양수산·보건		3							1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환경		2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사무운영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기술 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 한수도 사업소			
일 반 직	7급 소계		184	82	19	9	3	5	4	9	53
	행정		20	14			1		2	1	2
	세무		2	2							
	전산		2	2							
	사회복지		10	2						1	7
	숙기		1						1		
	공업		3	2				1			
	농업		1			1					
	녹지		2	2							
	수의		2			2					
	해양수산		4	4							
	시설		15	9				1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운전		11	2	2					2	5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6	5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6	4						2	10
	행정·시설		14	9				1			4
	행정·환경		1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2			2					
	농업·수의		2			2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4	1					1		2
	행정·세무·시설		4	2							2
	행정 전산농업방송통신		4	2							2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3						1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3						2		1	
통신운영		1							1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8급 소계	147	62	33	5	2		2	3	40
	행정	13	6					2		5
	세무	1	1							
	사회복지	6	2						1	3
	행정·농업·방호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2	2							
	보건	10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5		5						
	식품위생	1		1						
	환경	1	1							
	시설	9	5							4
	행정세무농업시설관리	3	3							
	운전	7	1		1					5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8	3						1	4
	행정·전산	2	2							
	행정·전산·농업	13	4		2					7
	행정·해양수산·시설·방재안전	5	3							2
	행정·시설	4	3				1			
	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환경	2	2							
	농업·녹지	3	3							
	행정·보건·간호	4	1	3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8	2							6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4	1						1	2
	행정·공업·시설	6	5				1			
	보건·간호·의료	3		3						
사무운영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 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9급 소계	98	50	2	5	1	14		2	24
	행정	10	9				1			
	사회복지	17	6						1	10
	환경	2	2							
	공업·시설관리	7					7			
	해양수산	1	1							
	보건	4					4			
	운전	3	1							2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9	3						1	5
	행정·농업	6	2		2					2
	행정·시설·방호	14	14							
	농업·녹지·시설	2	2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6	3		1					2
	행정·환경·시설· 방재안전	2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화공운영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상하수도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기술센터	업 터				
별 정 직	별정직 계	3	1					2		
	5급 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	1						1		
	6급 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의회전문위원	1						1		
연 구 직	연구직 계	2	2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직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별 표]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소	상하수도사업소					
총 계		651	291	68	54	9	23	13	22	171	총 계		656	292	68	56	9	23	13	22	173		
일반직	일반직계	620	287	68	29	9	23	11	22	171	일반직	일반직계	625	288	68	31	9	23	11	22	173		
	7급소계	182	82	19	7	3	5	4	9	53		7급소계	184	82	19	9	3	5	4	9	53		
	<신설>											수의	2			2							
	9급소계	95	49	2	5	1	14	-	2	22		9급소계	98	50	2	5	1	14	-	2	24		
	행정사회복지	6	2						1	3		행정사회복지	9	3						1	5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7-188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김 재 환	1973.12.21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010-2582-3774	731221-*****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15, 107동 2101호	

장소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609-5(구), 인근지번: 두곡리 939(답)

면적(또는
채취량 · 투기량)

16㎡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7. 11. 28. ~ 2022. 11. 27

점용 · 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하 동 군 수 (인)

하동군 고시 제2017 - 189호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해제사유	관리자
		구역면적 (ha)	총저수량 (m ³)	제당(m)			
				높이	길이		
성평	경남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677 일원	7.0	10,970	14. 0	125	개보수 공사 완료	하동군수
중하쌍	경남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984 일원	3.5	7,150	12. 0	39	개보수 공사 완료	하동군수

2017년 11월 28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고시 제2017 - 191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30.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867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6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11.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 명고 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 동군 진교면 고룡리 88	경상남도 하동 군 진교면 구 고속도로 867	2017 1130	2009 0702	예전의 고속도로 기념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 동군 하동읍 신기리 144-15	경상남도 하동 군 하동읍 군 청로 212	2017 1130	2007 0618	하동군을 상징하고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군청앞을 지나가 는 도로로 공공시설명 적용 도로명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 동군 옥종면 월횡리 14-7	경상남도 하동 군 옥종면 옥 단로 1163	2017 1130	2009 0702	행정구역명(옥종+ 단성면) 활 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 동군 화개면 부춘리 669	경상남도 하동 군 화개면 부 춘길 70	2017 1130	2007 0618	부춘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 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 동군 하동읍 두곡리 939	경상남도 하동 군 하동읍 서 재길 32-16	2017 1130	2009 0302	서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서재골 지역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 동군 화개면 운수리 326-3	경상남도 하동 군 화개면 쌍 계사길 59-1	2017 1130	2011 1013	쌍계사로 진입하는 주도로로 지역의 대표성을 도로명에 반영	

하동군 공고 제 2017-1240호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2 월 6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2. 제안 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5조 조문 내용 개정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 년 12 월 31일까지 하동군(참조 : 건설교통과, 전화 055-880-2522, FAX 055-880-2509, e-mail kyh2523@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조례 제 호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계속해서”를 “계속하여”로 “경우로써”를 “경우로서”로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100분의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u></p> <p>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u>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u></p> <p>[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p>	<p><u>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u></p> <p>제5조(점용료의 조정) -----<u>계속하여</u>----- <u>--경우로서</u>----- ----- -----<u>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u>-----.</p> <p>(삭제)</p>

관 계 법 령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하동군 공고 제2017- 124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귀농 귀촌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확충
- 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1명 : 귀농귀촌(증 1명)

3. 주요내용

- 군의 정원 총수를 657명(증 1명)으로 조정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643명→644명(증 1명)
-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의 별표3)
 - 총계 656명→657명(증 1명)
 - 일반직 계 625명→626명(증 1명)
 - 6급 이하 587명→588명(증 1명)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17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3, FAX055-880-2159,

e-mail:hae444@korea.kr)

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56명”을 “65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43명”을 “64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657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26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88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656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43명</u> 2. (생 략)</p>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657명</u>----- ----- ----- 1. ----- <u>644명</u> 2.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 \ 기관별</th> <th rowspan="2">총계</th> <th rowspan="2">본청</th> <th rowspan="2">의회 사무과</th> <th colspan="2">직속기관</th> <th rowspan="2">사업소</th> <th rowspan="2">읍</th> <th rowspan="2">면</th> </tr> <tr> <th>보건소</th> <th>농업 기술 센터</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656</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군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625</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4급~5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5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34</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r> <tr> <td> 6급 이하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587</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별정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5급 상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6급 상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연구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연구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지도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지도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 센터	총 계	656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25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87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 \ 기관별</th> <th rowspan="2">총계</th> <th rowspan="2">본청</th> <th rowspan="2">의회 사무과</th> <th colspan="2">직속기관</th> <th rowspan="2">사업소</th> <th rowspan="2">읍</th> <th rowspan="2">면</th> </tr> <tr> <th>보건소</th> <th>농업 기술 센터</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657</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군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626</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4급~5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5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34</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r> <tr> <td> 6급 이하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588</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별정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5급 상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6급 상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연구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연구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지도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지도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 센터	총 계	657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26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88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 센터																																																																																																																																																																																																																																																																																																																																							
총 계	656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25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87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 센터																																																																																																																																																																																																																																																																																																																																				
총 계	657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26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88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귀농 귀촌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확충
 - 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1명 : 귀농귀촌(증 1명)

2.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 농업기술센터 : 행정·농업9급 증1명

3.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17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3, FAX055-880-2159, e-mail:hae444@korea.kr)

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총 계			657	292	68	57	9	23	13	22	173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 반 직	일반직 계		626	288	68	32	9	23	11	22	173
	4급 소계		1	1							
	서기관		1	1							
	4~5급소계		3	2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시설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행정		3	2					1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		4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시설		4	3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농업·지도관		2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 업 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6급 소계		158	79	12	8	2	3	3	7	44
	행정		13	12	1						
	세무		1	1							
	숙기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7	7							
	운전		4	2					1	1	
	행정·세무		12	5						1	6
	행정·사회복지		6	5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9	9		4			1	1	14
	행정·녹지		3								3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5	14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3	2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		4	2		0					2
	행정·세무·시설		3	2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농업		2	1						1	
	행정·전산·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4	2			1				1
	행정·농업·녹지		3	1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4				1				3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시설·환경		2	1							1
	행정·해양수산·보건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환경		2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사무운영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7급 소계	184	82	19	9	3	5	4	9	53
	행정	22	15			1		3	1	2
	세무	2	2							
	전산	2	2							
	사회복지	10	2						1	7
	속기	1						1		
	공업	3	2				1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4	4							
	시설	16	9				2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수의	2			2					
	운전	11	2	2					2	5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7	4						2	11
	행정·시설	15	10				1			4
	행정·환경	1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2				2				
	농업·수의	2				2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2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식품위생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통신운영	1							1		
사무운영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8급 소계	147	62	33	5	2		2	3	40
	행정	14	7					2		5
	세무	1	1							
	사회복지	6	2						1	3
	방호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2	2							
	보건	10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5		5						
	식품위생	1		1						
	환경	1	1							
	시설	9	5							4
	시설관리	3	3							
	운전	7	1		1					5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전산	2	2							
	행정·농업	13	4		2					7
	행정·해양수산·시설	5	3							2
	행정·시설	5	4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2	2							
	농업·녹지	3	3							
	행정·보건·간호	4	1	3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8	2							6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4	1						1	2
	행정·공업·시설	5	4			1				
	보건·간호·의료	3		3						
사무운영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사 업소	상하수도사 업소			
일 반 직	9급 소계	99	50	2	6	1	14		2	24
	행정	10	9				1			
	사회복지	20	7						1	12
	환경	2	2							
	공업·시설관리	7					7			
	해양수산	1	1							
	보건	4					4			
	운전	3	1							2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6	2						1	3
	행정·농업	7	2		3					2
	행정·시설·방호	14	14							
	농업·녹지·시설	2	2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6	3		1					2
	행정·환경·시설 ·방재안전	2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화공운영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상하수도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별 정 직	별정직 계		3	1				2		
	5급 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		1					1		
	6급 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의회전문위원		1					1		
연 구 직	연구직 계		2	2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직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별 표]													
구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 무 과	읍	면	구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 무 과	읍	면
	직급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 육 사 업 소	상 하 도 사 업 소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체 육 사 업 소	상 하 도 사 업 소					
총 계			656	292	68	56	9	23	13	22	173	총 계			657	292	68	57	9	23	13	22	173
일반직	일반직 계		625	288	68	31	9	23	11	22	173	일반직	일반직 계		626	288	68	32	9	23	11	22	173
	9급 소계		98	50	2	5	1	14	-	2	24		일반직	9급 소계		99	50	2	6	1	14	-	2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공고 제2017-124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취지

- 일자리 창출 정책의 현장 추동력 확보를 위해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 내용 변경
- 귀농 귀촌 전담부서 신설로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여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경제수산과장 분장사무 내용 변경(안 제3조)
 - 경제수산과(지식경제) → 경제수산과(일자리창출)
 - 지식재산 및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 일자리창출 및 지식재산·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 대강 개정(안 제9조)
 - 귀농귀촌 사무 신설 :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촌진흥과(농업인력) → 농촌진흥과(농업인력, 귀농귀촌)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은 2017년 12월 17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3, FAX055-880-2159, e-mail:hae444@korea.kr)

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가목 중 “지식재산 및 지역경제발전”을 “일자리창출 및 지식재산·지역경제발전”으로 한다.

제9조제7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생략)</p> <p>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경제수산과</p> <p>가. <u>지식재산 및 지역경제발전</u>에 관한 사항</p> <p>나. ~ 마. (생략)</p> <p>5. ~ 13. (생략)</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p> <p>가. <u>일자리창출 및 지식재산·지역경제발전</u>--</p> <p>나. ~ 마. (현행과 같음)</p> <p>5. ~ 13. (현행과 같음)</p>
<p>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 ~ 6. (생략)</p> <p><신설></p> <p>7. ~ 15. (생략)</p>	<p>제9조(소관사무)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u>에 관한 사항</p> <p>8. ~ 16. (현행 제7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p>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1.1., 2017.1.6., 2000.00.00>

하동군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기획 조정 실장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통제
	2	실과소 업무의 기획 조정
	3	중장기 계획 및 조정
	4	군정업무 주요업무 확인평가
	5	군수공약 사항 및 지시사항 총괄관리
	6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상 시상
	7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8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9	외국인 정책 및 통계, 등록
	10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
	11	군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나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집행 결정
	4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설계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총괄추진
	5	전시 지방행정 동원계획 수립시행
	6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7	국고예산확보 및 보조금 관리 총괄
	8	지방기금 운영 총괄
	9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상환업무 총괄
	다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1	홍보 계획 수립
	2	군정홍보 및 보도
	3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 및 편찬
	4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
	5	전시 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실과명	분장사무	
기획 조정 실장	라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
	2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
	3	공무원 비위 예방대책과 비위조사·처리
	4	주민 감사 청구제 운영
	5	군 대형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임명제도 운영
	6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7	계약심사
	마	법무·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	조례, 규칙, 훈령 등의 제·개정, 폐지
	2	소송(국가, 행정, 민사)·행정심판·소청에 관한 사항
	3	행정절차제도 운영
	4	각종 규제의 개혁 및 관리
	5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바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1	자매결연, 국·내외교류업무 총괄
	2	국제교류업무 계획 및 개발
	3	국제파견 연수공무원 관리 및 지원
	4	사회봉사단체 관리 총괄
	5	사회봉사단체 보조금 지급 및 관리
	6	자원봉사활동 개발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실과명	분장사무	
문화 관광 실장	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1	지방문화예술 진흥
	2	문화예술분야 지도 육성 및 관리
	3	문화원 운영 지도 감독
	4	전시문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공도서관 지원 및 인쇄소·출판사 관리
	6	공연장 등록 관리
	7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 사업추진
	나	문화재에 관한 사항
	1	문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
	2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도
	3	국·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사업
	5	천연기념물(동물) 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항
	다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1	관광개발 계획수립 및 시행
	2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광관련 민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4	관광지 지정 및 개발
	라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
	1	각종 축제관련 종합계획 추진 및 총괄지원
	2	화개장터 벚꽃축제 추진
	3	하동야생차문화 축제 추진
	4	알프스하동 섬진강 재첩축제 추진
	5	어슬렁 캠핑 업무 추진
	6	회남재 숲길 걷기 업무 추진
	7	국제트레일 러닝 업무 추진
	8	축제 프로그램 신규 발굴

실과명	분장사무	
문화 관광 실장	마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1	슬로시티 업무 총괄 관리 및 추진
	2	관광 관련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관광 홍보(동영상) 업무 추진
	4	관광 통계 업무 추진
	5	관광객 안내(팸투어) 및 인센티브 업무 추진
	6	관광 여행업 업무 추진
	7	문화유산 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관리
	8	하동군 홍보대사 관리 업무 추진
	9	공동브랜드 관리 업무 추진
	10	관광상품 개발
	11	관광불편 민원 처리 업무 추진
	12	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획 총괄
	13	국내·외 관광설명회, 업무협약 추진
	바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3	화개장터 운영 및 관리
	4	삼성궁, 천제당 운영 및 관리
	5	지리산역사관 운영 및 관리
	6	최참판댁 운영 및 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미래 전략 과장	가	미래 전략사업 발굴 및 지역공동체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1	공모사업 총괄추진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공모
	3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5	창조지역사업 신청 및 관리
	6	시군 창의사업 신규공모
	7	특색있는 마을만들기사업
	8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
	나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	외자 및 국내 기업유치 활동
	2	투자유치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 운영 지원
	4	투자유치 타깃기업 관리
	5	개발 투자자 발굴 및 유치
	다	농·특산물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1	농·특산물 수출관련 전반
	2	수출확대 종합계획 수립
	3	해외시장 개척 활동 및 홍보
	4	수출전문업체 및 국내외 바이어 육성관리
	5	수출농단 및 관련시설 지원관리
	6	수출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
	7	수출홍보 마케팅 지원
	라	중소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1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2	기업활동 규제 완화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장설립 승인, 등록, 변경, 창업승인 및 사후관리
	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마	해양플랜트연구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학생모집 및 운영 등 지원
	2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
	3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지원
	4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관리 및 운영지원
	5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관리 및 활성화 대책 수립·시행

실과명	분장사무
경제 수산 과장	가 일자리창출 및 지식재산·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대책
	2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종합계획 수립·조정
	4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권 업무
	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종합계획수립 추진
	나. 전통시장육성에 관한 사항
	1 시장개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에너지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에너지 수급 종합계획 수립
	2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및 세부계획 수립
	3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술연구개발 및 사업화 계획 수립
	4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관련 업무
	5 전원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1 해양관광개발 사업 및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추진
	2 국가어항 및 다기능 어항 개발에 관한 사항
	3 국가마리나 개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유수면(해면) 관리에 관한 업무
	5 수산행정 업무의 기획조정 및 총괄
	6 어촌종합개발사업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무
	7 연안정비 사업 계획 수립 및 연안오염 방지시설 사업
	8 어항시설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9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어촌환경 개선
	마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2 해면어업 면허 및 관리
	3 수산증식사업 및 사후관리
	4 어업 피해예방 및 보상
	5 어선등록 및 관리
	6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7 안전조업지도 및 해난사고 예방
	8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9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실과명	분장사무	
주민 행복 과장	가	기초생활 보장지원 및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평가
	2	기초생활보장지원업무 계획 수립 추진
	3	생업·생활안정자금 용자 및 특별회계 관리
	4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관리 및 지원
	5	지역사업의 개발·관리 시행
	6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7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
	8	종합사회복지관 총괄 및 시설관리, 복지회관(목욕탕) 관리
	나	장애인복지, 자활 업무에 관한 사항
	1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2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3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4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5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6	장애인바우처 지원 사업
	7	자활프로그램 및 자활후견기관 관리
	8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9	사랑나눔미 빨래방 운영
	다	노인복지 대책수립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1	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2	노인소득보장 및 취업기회 확충
	3	묘지설치 허가 및 분묘의 개장신고
	4	사랑의 주택 관리 및 실버식당 운영
	5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경로당
	6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7	기초노령연금 지원 및 관리 운영
	8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라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1	여성정책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
	2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및 지원
	3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대회 관련사항
	4	여성폭력예방 및 방지사업 추진
	5	가정,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6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지원 및 관리
	7	가족지원 및 건강가정지원 업무
	8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
	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실과명	분장사무	
주민 행복 과장	마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선정, 자격관리, 근로능력판정에 관한 사항 추진
	2	복지대상자 각 사업팀 보장 결정 요청
	3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4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관리 및 특별회계 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5	차상위 계층 및 사회취약 계층 지원 업무
	6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
	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
	2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관리
	3	공공·민간기관 서비스연계 체계구축
	4	방문형 서비스사업 협력체계 구축 운영
	5	129희망콜(보건복지)센터 업무
	6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관리
	7	불우이웃돕기(공동모금회 연계), 후원·결연 업무
	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과명	분장사무	
행정 과장	가	조직, 인사, 여론,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	공무원의 임용, 표창, 징계, 교육
	2	호봉승급 및 호봉 재 획정
	3	공무원시험, 인사위원회 운영
	4	여론, 의전관리
	5	집단민원 총괄관리 및 행정구역 개편조정
	6	전시 주민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7	읍면 기능전환 계획수립 및 시행
	8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직제관리
	9	국가기반체계 보호
	10	전국 및 경남시장군수협의회 관련 업무
	11	일제강점하 및 과거사 진상규명
	나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
	1	복무, 보안, 공인관리
	2	주민자치,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 선거관련 업무
	3	정부3.0업무
	4	적십자회비 모금
	5	직장동호회 운영
	6	사무위임 및 전결규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9	직장금고 운영
	다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1	청소년 육성계획 및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민간청소년 수련시설 허가, 등록 및 지도
	4	청소년 자립대책 및 모범청소년 발굴 포상
	5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6	청소년 보호법 관련 사무 추진
	7	요보호아동 후원자 결연사업 지도관리
	8	결식아동 보호지원
	9	가정위탁 보호사업 지원 및 관리
	10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행정 과장	라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	범 군민 교육대책 운영
	2	초·중·고등 교육기관의 지원 활성화
	3	인재육성 장학재단
	4	특수대학(분교) 설립 육성
	5	교육환경 및 교육개발 기반개선
	6	평생학습관 설립 운영
	7	학교 기숙사·학원 설립 지원
	마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1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
	2	군민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정보 활성화 대책 추진
	3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 운영
	4	행정업무 전산시스템 주요서버 도입 및 운영
	5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및 운영
	6	회의실 방송장비 총괄 관리
	7	새울행정시스템 구축 운영
	8	IP전화시스템 관리 및 운영
	바	인구증대시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1	인구증가 종합추진계획 수립
	2	인구증가 시책추진
	3	출산장려시책 지원
	4	출산관련의료비 지원
	5	저출산대책

실과명	분장사무	
안전 총괄 과장	가	안전·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1	안전총괄·안전문화, 사회안전 업무
	2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관리
	3	특별사업경찰 업무 지원
	4	각종 재난상황 관리(보고 및 초동대응)
	5	안전·재난대비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운영
	6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7	승강기 관리 업무
	나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
	2	비상대비 대책수립 업무
	3	전시 병력동원업무 지원
	4	예비군 육성 지원
	5	사회복무요원 관리
	다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
	1	지역방재 계획 수립
	2	자연재난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대책
	3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추진
	4	재해위험지 조사 및 방재시설물 점검 및 관리
	5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	재해 사전대비 업무
	7	풍수해 보험 업무
	라	하천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하천 정비·유지관리
	2	기성제 정비 및 하도개선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4	골재 채취업 등록 및 관리
	5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6	공유수면(국토부)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사항
	마	섬진강 관련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섬진강 관련 업무 관리
	2	섬진강 인접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3	국가하천구역 편입 토지 보상
	4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관리
	5	국가하천 수변공원(4대강 사업구간) 관리
	6	공유(도유)재산 관리(하천구역 내)

실과명	분장사무	
민원 과장	가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	민원안내 및 상담
	2	여권업무 및 민원행정시책 추진
	3	민원 서비스 혁신(민원24)운영
	4	민원(신고, 인·허가 등)접수 통제
	5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관리
	6	고객만족도설문조사
	7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인감업무
	8	행정정보 공개운영 및 군정기록물 관리
	9	행정정보공동이용
	10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 및 운영
	나	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적 관리 기획 및 조정
	2	지적 측량 검사
	3	KLIS 구축사업 기획·조정 업무
	4	도곽접합 등 도면 정비
	5	정밀한 연속도면 제작 추진
	6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권한부여 등 관리
	7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
	8	토지등록사항정정 관련 업무
	9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 공부정리
	1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다	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적재조사 사업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
	3	지리정보신규사업 타당성 및 연계성 검토 총괄
	4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5	타 정보화사업과 GIS연계업무 및 통합 D/B 지원
	6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7	지적공부세계측지계변환업무

실과명	분장사무	
민원 과장	라	부동산관리 기획·조정 및 토지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	개별필지 특성조사, 지가 산정 및 검증 업무
	2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업무
	3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	부동산 실거래 업무
	5	새주소 도로명 부여 및 관리
	6	공간정보사업
	7	토지거래허가 업무
	8	지명에 관한 업무(지명위원회)
	마	민원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1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3	가로등(보안등) 설치(단, 도로개설시 제외)
	4	가로등(보안등) 개보수 및 유지관리
	5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6	가로등(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 사항 처리	
7	가로등(보안등) 수리용 차량 운영	

실과명	분장사무	
재정 관리 과장	가	지방세 부과 및 주택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	세정의 전문성, 효율성 대책 추진
	2	지방세 부과(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과세결정
	3	은닉세원 조사 및 발굴
	4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5	지방세 구제업무
	6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7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건축물, 선박·항공기) 부과
	8	지방세 세무조사 및 기타 지방세 부과
	9	개별주택 가격조사 계획수립
	10	표준주택 가격에 관한 업무
	나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1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2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3	공사 용역 계약 및 기타 계약관리
	4	공무원 급여 및 원천징수
	다	세입에 관한 사항
	1	세외수입 관리
	2	자금운용 및 자금배정
	3	국도비 및 보조금관리
	4	금고관리 및 수납대행점 관리
	5	수입증지 관리
	6	세입 과오납금 환부처리
	7	기부금품 모집 및 심의처리
	8	세입징수보고 및 세입결산
	9	세외수입원 발굴 등 세외수입 증대방안 추진
	10	기타 지방세입 수납업무에 관한 사항
	11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라	채납관리에 관한 사항
	1	지방세 및 과년도 세외수입 채납 정리 및 보고
	2	지방세 및 과년도 세외수입 채납액 징수(자동차등 과태료 채납 포함)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4	경매 및 공매관리
5	부동산·예금·채권 압류	
6	행정규제(관허사업 제한, 고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기타 행정규제)	
7	자동차 번호판 영치	
8	법원 경매 교부 청구 및 배당금 수령	

실과명	분장사무	
재정 관리 과장	마	국·공유재산 및 재물관리에 관한 사항
	1	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재물조사 실시
	2	청사·관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지도
	3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업무지도 감독
	4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 잡종재산 관리
	5	도·군유 잡종재산 관리
	6	관용차량 관리
	7	물품출납, 보관 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산림 녹지 과장	가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	산림 조성 종합기획
	2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3	임업단체 육성 및 지도관리
	4	산림분야 종묘업 등록업무
	5	산림분야 공모사업
	6	농림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7	임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 지도감독
	8	공유림 관리에 관한 업무
	9	백두대간 지원업무
	나	산림보호,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산불방지 종합대책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예찰
	3	숲 가꾸기 사업
	4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5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및 시행
	6	송림공원 관리
	7	입목벌채 허가, 신고
	8	임산물 굴·채취 허가 및 신고
	9	등산로 조성 및 관리
	10	숲길 조성 및 관리
	11	공원 조성 및 관리
	12	자연공원(국립공원) 관련업무 전반
	13	군립공원 관리
	14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조성
	15	섬진강재첩테마공원 조성
	다	산림토목에 관한 사항
	1	산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2	산림입지 조사
	3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4	산림재해대책 및 복구
	5	임도시설 및 관리
	6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
	7	보안림 지정 및 관리
	8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
	1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2	수목원, 생태숲 조성 및 관리
	3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
	4	산촌생태마을 조정 및 관리
	마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가로수 조성 및 관리
2	도로변 꽃길 꽃동산 조성 및 관리	
3	학교숲 조성 업무	

실과명	분장사무	
건설 교통 과장	가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도로교통량 조사
	2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	오지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5	도서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6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 폐지
	7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면허관리
	8	지하수 개발이용 인허가
	9	국도, 지방도사업, 소규모사업 보상관련업무 일체
	나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	농업기반 조성 종합 기획·조정
	2	경지정리 사업
	3	농업용수 개발
	4	농업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5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6	농지개량사업 시행 인가
	7	정주권 개발사업
	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9	밭기반 조성사업
	10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1	공유(도유)재산 관리(농업생산기반시설 내)
	다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1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 및 정비
	2	도로공사로 인한 수익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3	접도구역 관리
	4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 단속
	5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
	6	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7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8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9	도로 설해대책
	10	관내 도로 교량관리
11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관련업무 일체	

실과명	분장사무	
건설 교통 과장	라	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통합, 선도, 일반)
	2	권역단위 및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3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4	신규마을조성사업
	5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
	마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교통행정 종합기획·조정
	2	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등록 및 지도감독
	3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지도감독
	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5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6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실과명	분장사무
환경 보호 과장	가 환경보전업무 종합계획수립, 기후변화, 생태에 관한 사항
	1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3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관련업무
	4 수변구역 관리 및 행위허가, 협의 업무
	5 일반 및 직접지원 주민지원사업 추진
	6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
	7 개발관련 오염총량 협의 및 부하량 관리
	8 토양오염 유발시설 인허가 및 관리
	9 기후변화 대응 관련업무
	10 탄소포인트제 시행 및 평가
	11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지원
	12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업무
	13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14 녹색시범마을 육성 지원
	15 지리산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지리산국제환경생태예술제
	나 대기, 폐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환경오염 단속에 관한 사항
	1 환경신문고 운영관리
	2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단속 관리
	3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 지원
	4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단속 관리
	5 생활·소음진동, 생활악취 규제
	6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예방관리
	7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공사,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8 밀렵단속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리
	9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관리
	다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생활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지도단속
	3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소 지도단속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사후관리
	5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및 운영관리
	6 공중화장실 총괄 관리
	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전반
	2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
	3 소각시설 가동 및 유지관리
	4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5 매립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6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도시 건축 과장	가	도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온천에 관한 사항
	1	군 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
	2	도시계획 입안 시행
	3	시가지 및 도시구획 정리
	4	군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5	도시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6	택지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7	경전선 철도 이설
	8	광역권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9	개발촉진지구 지정
	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1	군 계획시설 개설계획 수립 및 편입부지 보상
	2	군 계획시설 개설공사 시행 및 감독
	3	도시공원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4	소도읍 육성 업무 및 섬진강체육공원 조성
	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다	건축 디자인(광고물) 및 행정에 관한 사항
	1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빈집 정비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3	위법건축물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4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관리
	5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
	6	재해주택 관리
	7	주거복지(급여)에 관한 사항
	8	광고물 등 허가·신고 및 지도 감독
	9	경관개선사업 추진
	10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라	건축인허가(민원)에 관한 사항
	1	건축신고 및 허가업무
	2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업무
	3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 촉탁
	4	건축물 착공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
	5	건축물 대장정비 사업추진
	6	분양대상 건축물 분양승인
	마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1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2	농지전용허가·협의·변경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3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4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준공 후 수질검사

실과명	분장사무	
산단 조성 과장	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총괄 기획·조정
	2	남해안시대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
	3	남해안시대 관련 자료 수집 및 홍보물 제작
	4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동향관리 및 개별법 관련 업무 추진
	5	선벨트 남중권 프로젝트 기획 조정
	6	남해안시대 관련 해양개발사업 추진
	7	해양레저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
	1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추진
	2	대송산업단지조성 및 사후관리
	3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수목적법인 이사회 운영 및 관리
	4	경제자유구역 관련 기반시설(내부간선도로, 공업용수, 폐수) 사업 추진
	다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	신도시 개발지구 지정
	2	갈사만 배후도시 개발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5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7	공업지구 내 공장 설립 등에 관한 사항
	8	두우배후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9	금성조선농공단지 및 사후관리
	라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보상에 관한 사항
	1	경제자유구역개발 보상 업무 추진
	2	공공용지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3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보상민원 해결
	4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업무 추진

[별표 2] <개정 2014.9.2, 2016.1.1., 2017.1.6., 2000.00.00>

하동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 및 제9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보건 소장	가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1 공중보건 의사 배치·복무 관리
	2 보건기관 시설물 관리
	3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및 지도
	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5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6 보건지소 의약품 및 각종 기자재 구매업무
	7 보건사업 업무기획 및 조정
	8 의료반 운영 및 각종의료지원 업무
	9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건강진단 등 신고
	나 예방의약에 관한 사항
	1 소독의무대상시설관리
	2 의료기관 등 지도 관리
	3 약물관리,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4 마약류 지도·관리
	5 한센병 등록환자 관리
	6 예방접종 사업
	7 신종감염병 발생시 대책상황실 운영
	8 감염병 관리 업무
	9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및 각종 감염병 관리 웹 보고
	10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11 국가결핵관리사업
	12 장기이식 등록 관리
	13 기생충퇴치사업
	14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사업
	15 방역소독사업
	다 건강지원에 관한 사항
	1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및 지원
	2 국가암 조기검진
	3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 지역사회 건강조사
	5 노인인고관절 수술비 등 지원
	6 저소득층 특수질환 조기검진사업
	7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관리
	8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실과명	분장사무	
보건 소장	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진료 및 전담인력관리)
	3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연계사업
	4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5	만성질환관리사업(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6	금연사업(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7	모자보건사업
	8	재가장애인 등록 및 재활치료
	9	경로당 방문진료
	10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11	치매관리사업
	12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
	13	어르신틀니사업
	14	건강증진사업
	마	진료에 관한 사항
	1	건강검진 업무
	2	민원 제증명 발급, 수입금 관리 등 민원실 운영
	3	성병, 에이즈 등 각종 검사관리
	4	건강검진, 민원 병리검사 관리
	5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 등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7	특수의료장비 관리
	8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업무
	바	공중이용시설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	식품영업(신고·허가)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업소 개설업무
	3	위생지도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4	무허가업소 지도단속
	5	국민건강 위해식품 단속
	6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관리
	7	식품·공중위생 교육·홍보

실과명	분장사무	
농축산 과장	가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센터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경관보전 직불제 및 경관작물 축제
	4	농촌특산단지 및 농업법인 육성지도
	5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지방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7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나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1	양곡 수급관리
	2	식량작물(쌀, 밭농업) 직불금 지원
	3	농어촌 진흥기금 관리 운영
	4	FTA 대책 및 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 직불제
	6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7	농업인용자이전보조금지원사업
	다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	한우산업 육성
	2	낙농산업 육성
	3	양계산업 육성
	4	양돈산업 육성
	5	양봉, 토봉산업 육성
	6	기타 가축 육성
	7	축산물 브랜드 육성
	라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1	가축방역 및 약품지원 사업
	2	가축 질병예찰 및 병성감정
	3	공수의 지도 감독
	4	공동방제단 운영
	5	반려 및 유기동물 관리
	6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및 보상
	7	축산환경개선

실과명	분장사무	
농축산 과장	마	농업기계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
	2	농업기계 사후봉사 업체관리
	3	농업기계화 촉진 및 실수요자 교육
	4	농업 기계화사업
	5	농기계 보관 창고 관리
	6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실과명	분장사무	
농촌 진흥 과장	가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2	농업인 단체 육성 및 관리
	3	농업인 품목 연구회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사업
	4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
	5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6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사업
	7	농업인 전문역량개발 교육
	나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1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3	귀농귀촌인 관리·교육 및 지도
	4	도시민유치 및 귀농창업 지원사업
	5	농촌일자리 창업교육
	6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및 지도
	7	후계농업경영인 및 산업기능요원 선정·관리
	8	한국 농수산대학 졸업생 사후관리
	다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1	농촌체험관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2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3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관리지도
	4	팜스테이 마을 육성 및 관리 지도
	5	농산물 및 소규모 마을축제
	6	농가민박 육성 및 관리
	7	마을 가꾸기 사업
	8	농촌관광 체험행사 지원 및 종합계획 수립
	라	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
	1	향토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
	2	벤처농업 육성
	3	식품산업 육성지원
	4	새로운 지역특화산업 개발 및 지원
	5	농업인 기술개발 사업
	6	농업경영 개선지도
	7	농업인 정보화 촉진 사업
	마	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1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2	농작업환경개선 및 편의장비 보급
	3	생활문화전승 및 기술지원
	4	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 육성
	5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도
	6	생활개선회 육성 및 관리
7	농촌여성 활력 증진교육	
8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관리	
9	향토음식 개발 및 보급	

실과명	분장사무	
농촌 진흥 과장	바	농·특산물의 유통가공에 관한 사항
	1	농산물 국내유통 관련 전반
	2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3	농·특산물의 가공 지원
	4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5	농·특산물의 쇼핑몰 및 각종 판매장 운영관리
	6	특산물의 마케팅 지원

실과명	분장사무	
농업 소득 과장	가	농업의 신소득작물 개발과 친환경 농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관리
	2	친환경농업단지 및 생태농업단지 조성
	3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및 친환경인증 활성화
	5	과학영농시설 운영
	6	지역농업개발센터 종합운영
	7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실증시범 사업
	나	식량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
	1	식량생산 종합계획 수립
	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
	3	고품질 쌀 생산 및 기술지도
	4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 및 종자업 등록
	5	농약 안전 사용 및 현장기술 지도
	6	토양·식물체·관개수 등 환경농업 실태조사 및 분석
	7	농업재해 조사 및 복구 지원사업
	다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	채소·화훼 종합계획 및 생산
	2	수출전략 작목 개발 및 농가보급
	3	채소 지역 특화품목 육성·지도
	4	시설채소·노지채소 신기술 보급지도
	5	채소 및 화훼분야 소득작목 개발
	6	시설채소 육성 및 지원사업
	7	채소 농약 안전사용 및 병해충 방제
	라	과수, 특용작물 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	과수·특용작물 종합계획 수립 및 생산
	2	FTA대응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3	과수·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4	버섯재배 및 시범사업 추진지도
	5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6	잠업 기술 지도
	7	농작물 재해보험 관리
	마	낙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	하동 낙차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2	공동 포장재 지원사업 및 품질개선 등 경상사업
3	낙차산업의 부가가치 증대계획 수립 시행	
4	낙차연구소 관련 업무·사업 지원 및 점검	
5	차 문화센터 관리운영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td> </tr> <tr> <td style="width: 10%;">실과명</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분장사무</td> </tr> <tr> <td>경제 수산 과장</td> <td style="width: 5%;">가</td> <td>지식재산 및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td> </tr> </table> <p>[별표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 및 제 9조 관련)</td> </tr> <tr> <td style="width: 10%;">실과명</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분장사무</td> </tr> <tr> <td rowspan="1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농촌 진흥 과장</td> <td>가</td> <td>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td> </tr> <tr> <td>1</td> <td>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조정</td> </tr> <tr> <td>2</td> <td>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도</td> </tr> <tr> <td>3</td> <td>귀농인 관리 및 지도</td> </tr> <tr> <td>4</td> <td>농업인 품목조직 육성에 관한 사업</td> </tr> <tr> <td>5</td> <td>농민회 육성 지도</td> </tr> <tr> <td>6</td> <td>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td> </tr> <tr> <td>7</td> <td>농업인 교육 훈련</td> </tr> <tr> <td>8</td> <td>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조직관리</td> </tr> <tr> <td>9</td> <td>농업경영 개선지도</td> </tr> <tr> <td>10</td> <td>농업인 정보화 촉진 사업</td> </tr> <tr> <td>나</td> <td>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td> </tr> <tr> <td>다</td> <td>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td> </tr> <tr> <td>라</td> <td>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td> </tr> <tr> <td>마</td> <td>농특산물의 유통가공에 관한 사항</td> </tr> </table>	하동군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경제 수산 과장	가	지식재산 및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하동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 및 제 9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농촌 진흥 과장	가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조정	2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도	3	귀농인 관리 및 지도	4	농업인 품목조직 육성에 관한 사업	5	농민회 육성 지도	6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	7	농업인 교육 훈련	8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조직관리	9	농업경영 개선지도	10	농업인 정보화 촉진 사업	나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다	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	라	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마	농특산물의 유통가공에 관한 사항	<p>[별표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td> </tr> <tr> <td style="width: 10%;">실과명</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분장사무</td> </tr> <tr> <td>경제 수산 과장</td> <td style="width: 5%;">가</td> <td>일자리창출 및 지식재산·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td> </tr> </table> <p>[별표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 및 제 9조 관련)</td> </tr> <tr> <td style="width: 10%;">실과명</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분장사무</td> </tr> <tr> <td rowspan="20"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농촌 진흥 과장</td> <td>가</td> <td>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td> </tr> <tr> <td>1</td> <td>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조정</td> </tr> <tr> <td>2</td> <td>농업인 단체 육성 및 관리</td> </tr> <tr> <td>3</td> <td>농업인 품목 연구회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사업</td> </tr> <tr> <td>4</td> <td>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td> </tr> <tr> <td>5</td> <td>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td> </tr> <tr> <td>6</td> <td>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사업</td> </tr> <tr> <td>7</td> <td>농업인 전문역량개발 교육</td> </tr> <tr> <td>나</td> <td>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td> </tr> <tr> <td>1</td> <td>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td> </tr> <tr> <td>2</td> <td>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td> </tr> <tr> <td>3</td> <td>귀농귀촌인 관리·교육 및 지도</td> </tr> <tr> <td>4</td> <td>도시민유치 및 귀농창업 지원사업</td> </tr> <tr> <td>5</td> <td>농촌일자리 창업교육</td> </tr> <tr> <td>6</td> <td>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및 지도</td> </tr> <tr> <td>7</td> <td>후계농업경영인 및 산업기능요원 선정관리</td> </tr> <tr> <td>8</td> <td>한국 농수산대학 졸업생 사후관리</td> </tr> <tr> <td>다</td> <td>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td> </tr> <tr> <td>라</td> <td>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td> </tr> <tr> <td>마</td> <td>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td> </tr> <tr> <td>바</td> <td>농특산물의 유통가공에 관한 사항</td> </tr> </table>	하동군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경제 수산 과장	가	일자리창출 및 지식재산·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하동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 및 제 9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농촌 진흥 과장	가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조정	2	농업인 단체 육성 및 관리	3	농업인 품목 연구회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사업	4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	5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6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사업	7	농업인 전문역량개발 교육	나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1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3	귀농귀촌인 관리·교육 및 지도	4	도시민유치 및 귀농창업 지원사업	5	농촌일자리 창업교육	6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및 지도	7	후계농업경영인 및 산업기능요원 선정관리	8	한국 농수산대학 졸업생 사후관리	다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라	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	마	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바	농특산물의 유통가공에 관한 사항
하동군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경제 수산 과장	가	지식재산 및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하동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 및 제 9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농촌 진흥 과장	가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조정																																																																																																							
	2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도																																																																																																							
	3	귀농인 관리 및 지도																																																																																																							
	4	농업인 품목조직 육성에 관한 사업																																																																																																							
	5	농민회 육성 지도																																																																																																							
	6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																																																																																																							
	7	농업인 교육 훈련																																																																																																							
	8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조직관리																																																																																																							
	9	농업경영 개선지도																																																																																																							
	10	농업인 정보화 촉진 사업																																																																																																							
	나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다	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																																																																																																							
	라	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마	농특산물의 유통가공에 관한 사항																																																																																																								
하동군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경제 수산 과장	가	일자리창출 및 지식재산·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하동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 및 제 9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농촌 진흥 과장	가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조정																																																																																																							
	2	농업인 단체 육성 및 관리																																																																																																							
	3	농업인 품목 연구회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사업																																																																																																							
	4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																																																																																																							
	5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6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사업																																																																																																							
	7	농업인 전문역량개발 교육																																																																																																							
	나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1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3	귀농귀촌인 관리·교육 및 지도																																																																																																							
	4	도시민유치 및 귀농창업 지원사업																																																																																																							
	5	농촌일자리 창업교육																																																																																																							
	6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및 지도																																																																																																							
	7	후계농업경영인 및 산업기능요원 선정관리																																																																																																							
	8	한국 농수산대학 졸업생 사후관리																																																																																																							
	다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라	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																																																																																																							
	마	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바	농특산물의 유통가공에 관한 사항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공고 제2017- 1212호

2017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공고

하동군에서는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산업 확대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하 동 군 수

□ 2017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제도 개요

- 운영기간 : 2017. 11. ~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 지원분야 : 5개분야 (내국인, 외국인, 수학여행단(현장체험), 기차 관광객, 유료이용시설(레일바이크,짚와이어,스윙점프 이용객)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신청 : 해당여행업체가 여행일정 종료 후 유치보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접수처 : 하동군 문화관광실 슬로시티부서(전화 055-880-2378)
- 유치실적 확인 및 보상금 지급 : 매분기 다음달 지급

□ 지원사업

- 지원 방법 : 보상제(여행사에 관광객 1인당 일정액 지급)
- 지원기준 및 지원액

구 분	지원기준	지원규모(1인당) (원)			지원조건
		당일	1박	2박이상	
내국인 단체	30명이상	-	13,000	15,000	○ 당일관광 : 유료관광지 (1), 음식업소(1) 이용
외국인 단체	10명이상	-	15,000	25,000	
수학 여행단	50명이상	-	5,000	10,000	
기차여행	4인이상	5,000	13,000	15,000	○ 숙박관광 : 유료관광지 (2), 음식(2)숙박업소(1) 이용
레일바이크, 짚와이어, 스윙점프 이용 단체	30명이상	5,000	10,000	15,000	

□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실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신청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참가신청서** 【제1호 서식】 : **여행 7일전**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제2호 서식】 : **여행후 15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원칙, 우편, 팩스(055-880-2369), E-mail 신청 가능
 - ※ 신청서 및 음식 / 숙박업소 이용확인서 및 관련 서류 등은 **원본 제출**

□ 지원조건 및 기준

○ 지원조건

- 1) 관내 당일 관광 또는 숙박이 포함된 여행 일정을 하동군(문화관광실)에 사전 통보한 여행업체(학교)로서,
- 2) 타 지역 내국인·외국인 단체관광객(내국인 30인, 외국인 10인이상) 수학여행단 50인이상, 기차여행객(4인이상 상품), 유료관광시설(레일바이크, 짚와이어, 스윙점프)이용객 유치여행사로 아래 조건의 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소
 - 공중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업소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이나 교육원, 체험마을
 - 관내에 소재한 음식업소
 - ※ 내·외국인 동반인 경우 내-외국인 총원 30인 이상인 경우에 각각 기준에 따라 지급
 - ※ 기차관광의 경우 관내 기차역을 통해 하동군 관내를 관광하는 상품에 해당
- 3) 관광지 및 숙박시설 확인
 - **당일관광** :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 식당 1식 이상>
 - **숙박관광** : 관내 <유료관광지 2개소 + 식당 2식 이상 + 숙박 1박 이상>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첨부(간이영수증 불가)

□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기사, 가이드, 안내원 등) 및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투어
- 하동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관내 관광일정을 하동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관광
- 관광이나 여행목적이 아닌 경우와 지원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관광
-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완전 배제

□ 지급방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수된 내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 업체의 신청에 의거 서류 검토 후 매분기 다음달 계좌 입금
(유치 지원금 지급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절차

- 관광 실시 전 관광계획서 및 일정표 제출 : 여행사 → 군 **【제1호 서식】**
- 관광 실시 후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등) 확보 : 여행사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참가 신청서 제출 : 여행사 → 군 **【제2호 서식】**
- 관광 및 숙박시설 확인 요청 : 여행사 → 해당 음식 / 숙박 업소 → 군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서류 검토 후 지급 : 군 → 여행사

□ 신청서식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참가신청서 **【제1호 서식】** 신청 7일전 접수
 - 관광 일정(예시) **【제1-1호 서식】**
 -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공제가입증서, 여행계약서 사본 등
 - 관광객 모집 현황(인터넷 확인서류 등)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제2호 서식】** 완료후 15일 이내 접수
 - 단체관광 참가자 명단 **【제2-1호 서식】**
 - 관광지 방문 결과(예시) **【제2-2호 서식】**
 -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이용확인서 **【제2-3호 서식】**
 ※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계약시 카드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확인 필수
 - 기타 관련 자료 **【제2-4호 서식】** **【제2-5호 서식】**
 (방문관광지 사진,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입장권 등) 첨부
 - 여행업 회사명의 통장 사본
 - 기차여행의 경우, 기차 티켓 발권 영수증 등

□ 유의사항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 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청접수 순으로 우선 지급(예산 소진 시 사업 자동종료 원칙)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 배제함
- 접수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원본 제출 원칙)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하동군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증빙서류

□ 인센티브 참가 신청서 -----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1. 하동관광 일정 계획(1-1서식) 1부.
2.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관광객 모집 현황(인터넷 확인 등) 1부.
4. 공제보험가입증서, 여행계약서 사본 등 각 1부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제2호 서식

- 첨부서류

1. 단체관광 참가자(여행자) 명단(2-1서식) 1부.
2. 관광지방문 결과(여행 일정표)(2-2서식) 1부.
3. 음식점소 및 숙박업소 이용확인서(2-3서식) 1부.
 ※ 간이영수증 사용은 불가
4. 방문관광지 사진 및 증빙대장(2-4서식) 1부.
5.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서(2-5서식) 1부.
6. 여행업 인센티브 지급 통장 사본 1부. 끝.

□ 하동군 유료 관광지 현황

□ 2017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검토결과보고

[서식 1]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참가신청서

신고여행사

여행사명		대표자	
주 소			
업 종	국내, 국외, 일반	등록년월일/등록번호	
연 락 처	전화번호 :		FAX :

관광 계획

- 기 간 : 2017. . . ~ 2017. . . (1박 2일)
- 인 원 : . . . 명(내국인 . . . 명, 외국인 . . . 명)
- 관광코스 : “붙임” 참조
- 식사 또는 숙박예정 업소명 :

상기와 같이 하동군 관내 관광을 실시코자 합니다.

- 붙임 1. 하동관광 일정 계획(1-1서식) 1부.
 2.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관광객 모집 현황(인터넷 확인 등) 1부.

2017. . . .

신청자 : 업체상호명
 대표자 (인)
 연락처

하 동 군 수 귀 하

[서식 1-1]

하동군 관광 일정 계획 “예시”

□ 1박 2일

		시 간			관 광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1 박 2 일	첫 째 날	08:00	12:00	240	○ 서울 → 하동읍(하동시외버스터미널) 도착	
		12:00	13:00	60	○ 중식(식당 이름 기재)	
		13:00	15:00	120	○ 삼성궁 이동 및 관람	
		15:00	16:00	60	○ 지리산생태과학관, 금오산 레포츠시설, 구제봉	
		16:00	17:00	60	○ 하동읍 이동	
		17:00	~		○ 석식 및 취침 (식당 이름 및 숙박업소 기재)	
	둘 째 날	07:00	08:00	60	○ 조식(식당 이름 기재)	
		08:00	09:00	60	○ 이동(화개)	
		09:00	11:00	120	○ 화개장터	
		11:00	13:00	120	○ 쌍계사 / 불일폭포 / 대도파라다이스	
		13:00	14:00	60	○ 중식 및 휴식(식당 이름 기재)	
		14:00	16:00	60	○ 최참관댁 / 평사리 공원 / 차문화센터 / 토지문학관	
		16:00	18:00	120	○ 송림공원 / 하동포구공원	
		18:00	~		○ 하동출발	

□ 당일

	시 간			관 광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당 일	07:00	11:00	240	○ 서울 → 하동읍(하동시외버스터미널) 도착	
	11:00	12:00	60	○ 하동송림공원 / 하동포구공원	
	12:00	13:00	60	○ 중식(식당 이름 기재)	
	13:00	14:00	60	○ 화개장터	
	14:00	16:00	120	○ 쌍계사 / 불일폭포 / 대도파라다이스 / 토지박물관	
	16:00	17:00	60	○ 최참판댁 / 평사리공원 / 차문화센터 / 구제봉	
	17:00	17:30	30	○ 하동버스터미널로 이동	
	17:30	~		○ 하동출발	

※ **유료관광지** : 최참판댁(박경리문학관), 쌍계사, 지리산생태과학관, 삼성궁(청학동)

[서식 2-1]

단체관광 참가자(여행자) 명단

여행기간 : 2017. . . . ~ 2017. . . . (1박 2일)

여행인원 : 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

연번	지 역	주 소 (업 체 명)	성 명	성 별	비 고 (외국인 : 여권번호)
1				남,여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					

[서식 2-2]

하동군 관광 일정표 “예시”

□ 1박 2일

		시 간			관 광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1 박 2 일	첫 째 날	08:00	12:00	240	○ 서울 → 하동읍(하동시외버스터미널) 도착	
		12:00	13:00	60	○ 중식(식당 이름 기재)	
		13:00	15:00	120	○ 삼성궁 이동 및 관람	
		15:00	16:00	60	○ 지리산생태과학관, 금오산 레포츠시설, 구제봉	
		16:00	17:00	60	○ 하동읍 이동	
		17:00	~		○ 석식 및 취침 (식당 이름 및 숙박업소 기재)	
	둘 째 날	07:00	08:00	60	○ 조식(식당 이름 기재)	
		08:00	09:00	60	○ 이동(화개)	
		09:00	11:00	120	○ 화개장터	
		11:00	13:00	120	○ 쌍계사 / 불일폭포 / 대도파라다이스	
		13:00	14:00	60	○ 중식 및 휴식(식당 이름 기재)	
		14:00	16:00	60	○ 최참관댁 / 평사리 공원 / 차문화센터 / 토지문학관	
		16:00	18:00	120	○ 송림공원 / 하동포구공원	
		18:00	~		○ 하동출발	

□ 당일

	시 간			관 광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당 일	07:00	11:00	240	○ 서울 → 하동읍(하동시외버스터미널) 도착	
	11:00	12:00	60	○ 하동송림공원 / 하동포구공원	
	12:00	13:00	60	○ 중식(식당 이름 기재)	
	13:00	14:00	60	○ 화개장터	
	14:00	16:00	120	○ 쌍계사 / 불일폭포 / 대도파라다이스 / 토지박물관	
	16:00	17:00	60	○ 최참판댁 / 평사리공원 / 차문화센터 / 구제봉	
	17:00	17:30	30	○ 하동버스터미널로 이동	
	17:30	~		○ 하동출발	

※ 유료관광지 : 최참판댁(박경리문학관), 쌍계사, 지리산생태과학관, 삼성궁(청학동)

[서식 2-3]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이용확인서

□ 음식업소 이용내역 ※ 단, 여행자 관계자인 운전자, 안내원 등은 제외

연번	식 사 일	식사인원(명)	결제금액(원)	비 고
계				
1	2017. . .			()원/1인

□ 숙박업소 이용내역

- 인솔가이드 : (연락처 :)
- 여행업체명 : (대표자 연락처:)

연번	숙박기간	인실	숙박인원 (명)	숙박결제금액 (원)	호실번호
계					
1	2017. . .	2인실			
2	2017. . .	3인실			
3	2017. . .	4인실			
4	2017. . .	6인실			

※ 단, 여행자 관계자인 운전자, 안내원 등은 제외

상기와 같이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이용내역을 확인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2017년 월 일

붙임 : 식사료, 숙박료 결제 증빙서류 1부(카드결제내역, 세금계산서 등)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확 인 자 업소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하동군수 귀하

[서식 2-4]

관광지 방문지 사진 및 증빙 대장(입장권 등)

관광지명 :	단체명 : (명)
“사진 붙임”	
관광지명 :	단체명 : (명)
“사진 붙임”	

※ 관광지 입장권 또는 영수증, 사진대지 등 첨부

[서식 2-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하동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단체의 금융계좌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2017년도 하동군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지방보조금 자료관리 종결시점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2017년도 하동군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2017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2017년도 하동군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지방보조금 자료관리 종결시점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2017년도 하동군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2017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	--------	----	------

하동군 유료관광지 현황

■ 쌍계사 입장료 (055-883-7019)

- 성인 2,5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500원
- 30인 이상 단체 : 성인 2,200원, 청소년·군인 800원, 어린이 등 400원

■ 삼성궁 입장료 (055-884-1279)

- 성인 7,000원, 청소년·군인 4,000원, 어린이·노약자·유공자 3,000원
- 30인 이상 단체 : 성인 6,000원, 청소년·군인 3,000원, 어린이 등 2,500원

■ 최참판댁 입장료 (055-880-2960)

- 성인 2,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노약자·유공자 1,000원
- 20인 이상 단체 : 성인 1,5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등 500원

■ 지리산 생태과학관 입장료 (055-880-2954)

- 성인 1,000원, 청소년·군인 800원, 어린이·노약자·유공자 600원
- 20인 이상 단체 : 성인 800원, 청소년·군인 600원, 어린이 등 400원

※ 최참판댁과 연계이용 시 입장료

- 성인 2,6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노약자·유공자 1,400원
- 20인 이상 단체 : 성인 2,000원, 청소년·군인 1,400원, 어린이 등 800원

■ 하동군 관광안내소

- 화개장터 관광안내소 : 055-880-5722
- 청학동(삼성궁) 청암 관광안내소 : 055-882-5379
- 약양 관광안내소 : 055-880-2950

※ 이병주 문학관 : 055-882-2354

※ 구재봉 자연휴양림 : 070-8855-8010. 8011

※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 055-882-2342

하동군 유료이용시설 현황

▣ 하동레일파크 이용료 (055-882-2244)

하절기		동절기		비고
월요일~목요일	금,토,일,공휴일 전날, 공휴일	월요일~목요일	금,토,일,공휴일 전날, 공휴일	
2인승 : 25,000	2인승 : 30,000	2인승 : 20,000	2인승 : 25,000	
4인승 : 30,000	4인승 : 35,000	4인승 : 25,000	4인승 : 30,000	

※ 할인

- 50% 할인 : 국가유공자, 하동군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
- 30% 할인 : 하동군민, 장애인
- 20% 할인 : 2인승 10대 이상, 4인승 8대 이상을 한 회차에 동시 이용

▣ 금오산 짚와이어 이용료 (055-884-7715)

	평일	주말 및 공휴일	비고
성인	40,000	45,000	
청소년 (14세이상~19세이하)	35,000	40,000	
어린이 (8세이상~13세이하)	30,000	35,000	

▣ 금오산 스윙점프 이용료 (055-883-1064~5)

구 분	기 준	개 인	단체 (20인 이상)	비고
빅스윙	어른(20세이상)	18,000	16,000	
	청소년(14세이상~19세이하)	16,000	14,000	
	어린이(8세이상~13세이하)	14,000	12,000	
파워팬/킥점프	어른(20세이상)	3,000	2,500	
	청소년(14세이상~19세이하)	2,500	2,000	
	어린이(8세이상~13세이하)	2,000	1,500	

2017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급 검토 결과 보고

□ 현 황

- 사업명 : 2017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 여행사 : (주)여행사 상호명 기재 대표 홍길동 (02-730-1234)
- 사업신청 내역

이용업소명 (숙박, 음식)	이용 일자	관광인원				방 문 관광지	비고
		관광객			여행사 관계자		
		계	내국인	외국인			
000리조트 (숙박) 000식당 (식당)	'17.2.25.~2.26 (1박2일)	104	100	-	4	쌍계사 최참판댁 푸드마켓 등	

- 예산과목 : 부서)문화관광실 정책)슬로시티 단위)관광홍보
세부사업)관광운영지원 편성목)일반보상금(301-11 기타보상금)

- 예산집행현황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기지출	금회신청액	잔 액
보상금	40,000,000		000,000	

□ 보상금 산출근거

- 내국인 100명 * (5,000원~25,000원) = 0,000,000 원

□ 교부신청서 등 검토 결과

구 분	점 검 내 용	검토결과
예산과목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적정
사업내용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적정
	당일 관광 적정 여부 (유로관광지1개소 + 식당1식 이상)	해당없음
	숙박 관광 적정 여부 (유로관광지 2개소 + 식당 2식 이상 숙박 1박 이상)	적정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신청서 제출	2017.2.10. 적정
	관광실시 전 관광계획서 및 일정표 제출	2017.2.10. 적정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	2017.2.28 적정
지원기준	내국인 단체 30명 이상	100명
	외국인 단체 10명 이상	해당없음
	수학 여행단 50명 이상	해당없음

	기타 여행 4인 이상	해당(제외함)
증빙서류 등	관광 실시 후 증빙자료 제출 적정 여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징구 포함)	2017.2.28 적정

□ 관광법 등 검토 결과

구 분	점 검 내 용	검토결과
1. 등록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서 - 건물 등 등기부등본 - 관광사업자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세무서신고)	○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주소지, 대표자가 관광사업자 등록상의 내용과 일치 여부 - 변경된 후 1월이내 - 기준일은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일	101-81-***** (2014.8.26.) 적정
2.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 일반여행업 5천만원 / 국외여행업 3천만원 ○ 국내여행업 2천만원 ○ 기획여행실시업 2억원 - 기간 만료시 재가입 여부 - 남의 명의로 가입 및 위장 영업 - 소급가입 불인정(행정처분대상)	일반여행업 '16.3.10~'17.3.9 적정
3. 행사 관계서류 - 단체행사 및 개인행사 - 행사계획서(계약서) 정산서 등 - 유자격국외여행인솔자 고용실태	○ <u>모객</u> 에서부터 행사 종료시까지의 전체 여행 일정 및 내용 점검 - 행사계획서와 정산서 내용 대조 확인 - 책정요금 적정성 / 쇼핑 및 옵션강요 등 - 단체행사시 가이드 인솔한 경우 자격소지 여부 확인	적정
4. 여행계약서 교부 관계 서류	○ 각 행사별 여행자와의 계약서 교부 증빙서류	적정
5. 모객을 위한 각종 여행 안내물 및 신문 광고 등	○ 모객광고(신문, 홍보, 팜플렛 등) 일정표, 계약서, 정산서, 행사 보고서 등 확인조사 - 덤핑 여부 조사 등	적정
6. 기타 확인 점검사항	○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 점검업체가 주소지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방문 일시 및 상태 등을 기록	해당없음
	○ 영업 전반에 걸쳐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시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점검시 반드시 개선토록 지시 - 향후 점검시 반드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잘된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도 청취 기록 	의견없음

위와 같이 「하동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 결정 요건 검토 결과를 보고합니다.

□ 검토 결과

- 상기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하동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이 적정하므로 지급코자 합니다.

2017. 2. 28.(화)

검토자 직 : 지방**6급 성명 : 정** (인)

하동군 공고 제2017 - 1219호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 신조등록 및 폐기공인을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1. 공인 사용 및 폐기일 : 2017. 11. 28.
- 2. 신조 및 폐기사유 : 하동군산단조성과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출납원 개설
- 3. 신조 ·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신조	폐기
신조 공인	하동군산단 조성과산업 단지조성특 별회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 형		

- 4. 신조공인 사용일 : 2017. 11. 28.(공고 후)

2017년 11월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7 - 1220호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 신조등록 및 폐기공인을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1. 공인 사용 및 폐기일 : 2017. 11. 28.
- 2. 신조 및 폐기사유 : 하동군환경보호과폐기물처리기금운용관 개설
- 3. 신조 ·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신조	폐기
신조 공인	하동군환경보 호과폐기물처 리기금운용관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 형		

- 4. 신조공인 사용일 : 2017. 11. 28.(공고 후)

2017년 11월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7-1241 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안)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공고

「하동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안)」중 주요 변경사항이 있어 「소하천정비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구역을 결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하동군수

- 1. 대상하천 : 소하천 2개소(상삼천, 신기천)
- 2. 열람기간 : 2017. 12. 05 ~ 2017. 12. 19(14일간)
- 3.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목적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의 변경사항이 있어 재차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함.
 -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구역 결정
 - 『토지이용규제법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지형도면고시
-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및 금남면, 진교면사무소
- 5.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류열람 후 양식에 의거 열람기간내 서면제출
- 6. 기타
 - **관계도서 : 게재생략**(하동군청 안전총괄과 및 금남면, 진교면사무소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880-25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안) 열람명단

계 획 명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안)		
계획대상	상삼천 L=1.284km, 신기천 L=2.1km		
위 치	상삼천 :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일원 신기천 :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일원		
계획시행자	하동군수		
공람기간	2017. 12. 5.부터 14일간		
장 소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및 금남면, 진교면사무소		
연번	성명	주소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주 민 의 견 제 출 서

계 획 명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안)	
계 획 대 상	상삼천 L=1.284km, 신기천 L=2.1km	
위 치	상삼천 :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일원 신기천 :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일원	
계 획 시 행 자	하동군수	
의견제출자	주 소	
	연락처	
	성 명	
의 견		

2017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